

10. 입 · 퇴소자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시설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임무)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함을 그 임무로 한다.

제3조 (위계관계) 이 규정은 시설의 규정집을 상위로 하며, 상기 규정에 제외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다.

제4조 (시설장의 직무)

1. 시설장은 시설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괄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시설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지정된 순위에 따라, 또는 지명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준수의무) 시설의 모든 직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결재절차) 시설의 사업 및 재정 등 모든 사항은 시설장의 결재를 득 한 후에 집행한다. 단, 위임전결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한다.

제7조 (회의) 시설의 업무 및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는 전직원회의, 팀장회의, 운영모임, 직원협의회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1. 전 직원회의는 월1회, 팀장회의와 직원협의회는 분기별 1회, 운영모임은 주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의 운영상 회의주기를 변경 할 수 있다.
2. 회의 장소는 원내 회의실에서 한다.

제2장 운영

제8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100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입소대상

- (1) 장기요양등급이 1,2등급인 어르신
- (2) 3,4,5등급의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상에 '재가 또는 시설급여'로 기재된 어르신

4. 입소절차

- (1)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
- (2) 입소신청: 일반-시설에 신청
수급자-신청에 신청(시설입소이용의뢰서)
- (3) 입소상담: 신청대상자를 시설에서 입소 상담 방문
- (4) 입소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의 목적은 심신의 안정으로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승인하고, 이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 2. 계약기간-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퇴소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4. 월 이용료 및 비 급여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 * 이용자 부담금 = 등급별수가 * 이용일수 * 20%(감경대상자12%, 8%)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 비급여 :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비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5. 서비스 내용과 비용
보건복지부가 정한 장기요양급여제공서비스와 간호요양급여서비스, 물리치료서비스, 영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이용료에 포함되며, 상황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에 준한다.
- (1) 장기요양급여제공서비스 : 입소 후 14일 이내에 초기적응을 돕기 위한 개별욕구 사정 후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득한 후 개별 급여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수행한다.
- 1) 신체활동 지원 - 어르신 개별 상태에 따라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식사, 목욕, 체위변경, 이동도움으로 일상생활 도움을 제공 하며 필요 시 화장실 이용하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 2) 기능회복훈련 - 어르신의 신체기능유지를 위해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서비스를 지원 한다.

- 3) 위생, 환경 관리 - 쾌적한 생활환경과 질병예방을 위해 침구, 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개인 물품관리, 세탁물관리를 지원하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의료 기구 및 장비를 관리 한다.
 - 4) 의사소통지원 - 일상회화, 책 읽기, 의사전달 대행과 함께 콜벨 대처 방법 등을 지원한다.
 - 5) 지역자원 연계 - 협약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질환 발생 시, 병원진료 시 동행 지원하며 자원봉사자와의 연계를 통하여 외부 나들이 등의 행사 시 지원을 받는다.
 - 6) 프로그램 지원 - 인지기능 상태 욕구사정에 입각하여 인지장애 정도에 따라 ROM체조나 치매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개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 7) 종교 프로그램 지원 - 미사, 호스피스, 영세식, 교리, 성모의 밤, 부활절, 성탄행사 등 종교행사 등을 지원한다.
 - 8) 효 프로그램/지역연계 프로그램 - 각 어르신의 생신에 생신파티를 제공하고, 어버이날 행사, 어르신의 날 행사 등에 지역 주민을 초대하여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밖에 명절 행사로 제사, 윷놀이 등을 지원한다.
- (2) 간호요양급여제공서비스 : 어르신에게 적절한 요양급여제공을 위해 어르신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급여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며 만성질환 관리 및 치매 관리 지원, 호스피스간호 등을 통해 장기간호요양 서비스를 지원한다.
- 1) 어르신의 질환 관련 욕구 사정에 따라 건강 관찰 및 활력측정(활력증후, 체중) 호흡기 간호, 피부간호, 통증조절 간호, 응급상황 대처, 투약간호 등을 계획 시행한다.
 - 2) 그 밖에 처치 : 복막 투석, 기관절개관 간호, Levin tube, peg tube 등 을 관리한다.
 - 3) 진료 보조 : 촉탁의 진료(월 2회)보조, 기록정리, 타 의료기관 외래진료, 입·퇴원 어르신 도움 지원, 응급 발생시 1차적인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필요시 119 요청)을 지원한다.
 - 4) 영양상태 욕구사정 계획과 간호 : 영양사와 연계하여 영양섭취, 식이상태 에 따른 메뉴 요청, 병원(의사)처방에 의한 위관영양 등을 제공 한다.
 - 5) 배설간호: 배설 관찰, 평가를 통한 변비, 설사 대상자 관리 및 배뇨문제 해결을 위한 방광훈련, 유치도뇨관 관리, 관장 등을 시행한다.
 - 6) 수급자(보호자) 교육 및 상담 : 낙상, 안전사고, 욕창예방, 노인학대 등 관련된 정보 제공하며 교육을 실시(어르신, 요양보호사, 보호자 등)하고, 어르신 건강상태 변화나 만성 질환 관리 등에 대해 어르신, 보호자에게 건강 상담을 지원한다.
 - 7) 호스피스 간호 : 호스피스 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보호사, 원목자)과 협력하여 대상자와 가족에게 적절한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지지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3) 물리치료 서비스 : 개별 대상자의 욕구 사정 및 신체 사정 및 평가를 통한 물리치료 급여계획에 의거하여 방문 물리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1)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근 마사지, 공기압 치료, 기능회복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신체기능 훈련 등을 지원한다.

2) ROM 체조(주3회)를 통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4) 상담 및 보호자 간담회

가. 개별욕구사항을 수렴하고 집단 상담 실시하여 문제해결 및 고충 처리를 지원한다.

나. 또한 질환별 주의 사항과 자료를 이용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은 이용자의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를 대신하여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제10조 2,3호에 있는 입소자와 보호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

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을 될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입소자의 병원진료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13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4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1)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 (4)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

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2) 감염성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격리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5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촉탁의(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1)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의는 월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2)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의는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3)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의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협약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 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2)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6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춘천시립요양원은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2) 건물 내에서 시설물의 잘못된 구조로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되었을 때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춘천시립요양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17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춘천시립요양원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보호자 등의 가족이 간병 등 일시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시설의 승낙을 받아야한다.

제18조 (면회, 외출, 외박 및 퇴소)

1. 면회 : 면회는 원내 거주 어르신을 찾아온 모든 분에게 적용된다.

(1) 면회시간은 09:00시부터 17:00까지로 제한한다.

(2) 면회는 면회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증어르신과 골절 등으로 절대안정이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 시설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2. 외출, 외박

(1) 보호자의 요청이나 동행외출 시 관련 팀장과 사전에 상의하여 진행한다.

(팀장은 어르신의 건강상태, 병원 진료계획 등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2) 해당팀장의 동의가 있을 시 총무팀에 비치된 외출·외박 대장에 보호자가 직접 외출, 외박 관련사항을 기록한다,

(3) 행선지, 보호자 연락처, 귀원시간이나 일시는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4) 어르신의 식이형태와 투약이 있는 경우 복용약, 복용방법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5) 해당 팀에서는 외출·외박 후 어르신의 의복교체나 목욕을 통해 신체상태 및 건강상태 등을 체크한다.

3. 퇴소

(1) 퇴소사유

1) 계약종료

2) 건강악화 및 등급 상향 조정에 따른 타 급여 제공을 원할 시

3) 시설 이용비용의 연체

4) 법정전염병 소지자 및 보균자 판정이나 건강상의 악화

5) 시설이용자의 서비스 거부

6) 시설이용자의 거주지 이전

7) 입소자의 사망

(2) 퇴소절차 및 내용

1) 서비스 계약 기간 종료될 시점에서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사항을 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계약여부를 확인한다.

- 2) 이용서비스의 계약 해지 및 퇴소가 확인 될 시 서비스 이용계약자는 퇴소신청서를 적성하여 시설에 제출한다.
- 3) 퇴소 시 시설은 입소자의 사유물품 및 금품을 인계하고 이용금액의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 4) 보호자 및 이용자가 타 시설으로의 연계를 원할 시에는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설정보를 제공한다.
- 5) 퇴소와 함께 타 시설로 연계 시에는 입소생활 시 욕구사항 및 서비스 제공 내역 등의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이용자가 타 시설에서 불편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6) 연계기록지 작성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수준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7) 시설이용자의 사망 퇴소 시, 보호자 및 연고자는 신병인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에 제출한다.

부 칙

1. (시행일)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관례에 준한다.